

## 우송대학교 산학협력체결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등”이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기타 협력이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2. “산업체”란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3. “연구소”란 연구수행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관공서”라 함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기타 기관”이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주관 및 관련부서)** ①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체결 실무절차
2. 협약관련 데이터 관리
3. 그 밖에 협약관련 제반 업무

②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체결 추천
2. 협약체결 이행을 위한 업무 협조

**제4조(업무)** 산학협력 체결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양성 강좌 및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7.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
8.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약관련 제반 업무

**제5조(협약명칭 및 구분)** ① 본교와 산업체간 또는 본교와 기타 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산학협력협약”이라 하며 체결업체를 “가족회사”로 명칭 정한다.

- ② 본교와 연구소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연학협력협약”이라 한다.
- ③ 본교와 관공서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관학협력협약”이라 한다.
- ④ 본교와 교육기관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학학협력협약”이라 한다.
- ⑤ 본교와 산업체 등의 협의에 따라 협약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신청)**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관련 학부(과) 또는 부서를 통해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협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협약승인 및 실무사항)** ① 제6조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며,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 등과 협의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와 산업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본교의 산학협력 협약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본교 소속으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제7조 ①항과 관련하여 매월 2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협약당사자)** 협약은 본교 총장과 산업체 등의 대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교와 산업체 등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내용)** 협약내용은 산학공동연구, 학생의 현장실습·인턴십·캡스톤디자인 등 위탁교육, 기술지도 및 자문, 정보교환, 기자재 및 자료 공동 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효력)** 협약은 본교와 산업체 등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서)**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세부협약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부대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산 학 협 력 협 약 서 (협약체결업체 마크)

우송대학교와 (협약체결업체명)은(는)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우송대학교와 (협약체결업체명)와의(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으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해당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공동번영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교류협력내용)

1.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3.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및 견학에 관한 사항
5. 구인, 구직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의 진흥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 제 3조(교류협력방법)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

## 제 4조(재정부담)

교류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 하며 “양 기관” 이 각 1부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우 송 대 학 교**

**총장 0 0 0**

**(협약체결업체명)**

**대표 0 0 0**

---

---

(협약체결업체  
마크)

# 산 학 협 력 협 약 서



(협약체결업체명)과(와) 우송대학교는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체결업체명)와 우송대학교와의(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으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해당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공동번영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교류협력내용)

1.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3.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현장 실습 및 견학에 관한 사항
5. 구인, 구직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의 진흥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 제 3조(교류협력방법)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

## 제 4조(재정부담)

교류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 하며 “양 기관” 이 각 1부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협약체결업체명)**

**대표    0 0 0**

**우 송 대 학 교**

**총장    0 0 0**

---

---